

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- 검토 보고 -

□ 제안이유

- 1981. 6.19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제정되어 규모이하제분업의 신고 등 규모이하 제분업 관리 및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1999. 1.21 양곡 관리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

□ 참고사항

-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

□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하여온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 및 관리에 있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- 조례를 폐지하므로 인하여 규모이하 제분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